

제5회 연성중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학교장	위원장

2023년 12월 15일(금요일) 15:20~

의사일정

- (1). 학생생활인권규정 제·개정에 관한 운영계획(안)
- (2). 2023학년도 제5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1. 국민의례 및 개회선포

☞간사 이00: 지금부터 2023학년도 연성중학교 제5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국민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간사 이00 : 다음은 교장선생님께서 인사 말씀 하시겠습니다.

2. 학교장 인사

☞학교장 박00 : 날씨가 궂은데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며 심의를 잘 부탁드립니다.

3. 개의선언 및 안건심의

☞부위원장 김00 : 오늘은 위원장님의 부재로 제가 대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간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사 이00 : 지난 10월 23일 제4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된 안건은

1. 2023학년도 제4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 1건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오늘 안건은 송부해드린 바와 같이

학생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운영계획 심의(안)

2023학년도 제5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 2건입니다.

☞ 부위원장 김00 :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 발의안건은 **학생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운영계획 심의(안), 2023학년도 제5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총 2건입니다.

안건심의를 위해 이번 임시회의를 12월 15일 1일간으로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전원 없다고 함)

이의 없으므로 회기결정은 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첫 번째 안건인 **“학생생활인권규정 제·개정 운영계획 심의(안)”** 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사 김00 : 안녕하세요 학생안전부장 김00입니다. 학부모위원님들께 질문드립니다. 학생이 학교에서 위험물건이나 수업방해물건을 소지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요즘은 학생들이 그것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지 않느냐고 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번 제·개정의 배경이 되고요, 초·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후 2024학년도 학생생활인권규정 제·개정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제안목적은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생생활인권을 규정하고, 규정 개정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을 충분히 공유하며 소통하고자 하며, 자치 문화를 형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논제는 교실내외 교실외 분리방법 및 규정 그리고 학생 물품 분리 보관 방법 및 규정입니다. 규정 개정 절차는 나눠드린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학생자치회에서 개정안을 발의하고, e-알리미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것을 토대로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확정하고, 학교장 결재 후 공포 및 보고, 안내와 적용 및 환류 순입니다. 또한 규정은 나눠드린 첨부물 학생생활인권규정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 검정색 글씨는 '23년 새로 넣은 것이고 파란색 글씨는 청에서 시달된 내용이며 빨간색 글씨는 청에서 시달된 내용을 학교에서 수정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5~6페이지이고, 규정은 생활지도의 범위, 생활지도의 방식, 기타로 크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생활지도의 범위는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그리고 그밖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분야에 대해서 학교장과 교원은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밖의 분야는 보시는바와 같이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학생에 대한 인식 및 태도,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 조성을 위한 용모 및 복장, 비행 및 범죄 예방, 그밖에 학칙으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활지도의 방식으로는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이 있는데, 훈육은 학교장과 교원이 지시·제지·분리·소지물품조사·물품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행위를 말하며, 조언 또는 주의로 학생의 행동에 대한 중재가 어려울 경우 훈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훈육의 경우 학생의 인권을 존중해야 하며 법령과 학칙의 범위에서 지시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조 4~6항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법령과 학칙에 금지된 행동을 학생을 발견한 경우 즉시 중지하도록 말로 제지할 수 있고,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 학생의 행위를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학교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해야 하며 학교장이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학생이 교육활동을 방해하여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업시간 중 교실 내 다른 좌석으로의 이동 또는 교실 내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 교실 밖 지정된 위치로의 분리의 방법으로 훈육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표 교실 내 및 교실 밖 분리 방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학생이 분리를 거부하거나 1일 2회 이상 분리를 실시하였음에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기존 보호자에게 학생인계를 요청하여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보호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등교중지 즉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 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꾸었습니다. 또한 분리로서 지도를 하였을 경우 지도의 일시 및 경위 등을 기존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학교장이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는 내

용을 교과담당교사가 그 사실을 보호자에게 알리고 분리지도보고서는 학년부에서 보관한다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11조 10항에서는 합리적이유가 있을 때 필요한 범위 내에서 학생의 소지물품을 조사할 수 있다 11항에서는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12항에서는 학생으로부터 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2조에서는 훈계를 규정하고 있는데 주의와 훈육을 실시하였음에도 개선이 없는 경우 훈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훈계사유와 관련된 시정을 위한 대안 행동이나 성찰하는 글쓰기 또는 훼손된 시설·물품에 대한 원상복구를 함께 부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13조에서는 보상을 규정하는데, 보상이란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무형의 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행위를 말하며 칭찬 또는 상을 그 수단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생활지도를 규정하며 학교장은 통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이해 및 특수교육 관련 연수 실시, 통합학급의 학생 수 감축, 특수교육교원과 통합학급 담당 교원의 협력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5조에서 생활지도 불응시 조치를 규정하는데 교원은 지속적으로 생활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해 학교장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16조에서는 학생 또는 보호자가 생활지도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14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답변해야 하나 동일한 내용으로 정당한 이유없이 반복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2회 이상 답변 후 이후에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보시는 것은 각종서식이며 제4절부터 교복 등 교내생활, 5절 휴대폰사용 및 소지에 관한 규정을 넣었고 제3장에서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었고 제4장에서는 학생자치회, 제4장에서는 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방법을 두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자료를 읽어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00 :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위원 정00: 병지각으로 미리 양해를 구한 경우도 수업방해에 해당되어 분리조치되나요?

☞교원위원 장00: 그 경우는 비해당됩니다.

☞지역위원 우00: 그렇다면 미인정 지각이라고 명확히 규정에 추가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사 김00: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위원 우00: 그런데 5페이지 표에 4호지도가 60분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교원위원 박00: 이것은 방과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그렇게 정한 것이고 다 가능합니다.

☞지역위원 우00: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00 : 또다른 의문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다고 함)

☞부위원장 김00 : 그럼 1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그러면 두 번째 안건인 “2023학년도 제5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실장 이00 : 5차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총액은 세입 세출 각각 2,003,500,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974,694,000원 대비 28,806,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급식비시보조금을 연초에 예상액대로 세워두었던 것을 실정에 맞게 725,000원 감액하였고, 목적사업비로 급식교육공무원 인건비가 교부되어 성립전예산으로 등록했던 것을 이번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확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사업이 종료된 목적사업비인 상하반기3종시설물안전점검비 및 상반기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비를 반납액만큼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연말이 도래하여 학교기본운영비로 편성했던 각종 부서의 종료사업잔액 등 필요없어진 예산액에 대해 각 부서의 요구에 따라 감액을 하고 예산액이 부족해진 각 부서의 세부사업에 편성하였는데 자세한 세부사업 간 이동사항은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각종수익자부담수입에 대해서도 사업이 종료하였거나 금액이 확정되어 현실에 맞게 감액처리하였고, 이자수입과 시설공사 공공요금 수입, 자

산 매감대금 등에 대해서도 필요한 부서의 세부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위원장 김00 :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문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 없다고 함)

☞ 부위원장 김00 : 그럼 2안은 원안대로 가결 및 심의종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의사봉3타)

- 참석위원 명단 : 김00, 정00, 우00, 박00, 장00, 이00, 박00

- 참석 교직원 명단 : 간사(행정실장)이00, 서기 조00